

중대재해 대응 메뉴얼

구 성

- I. 개요
- II. 재해 발생 시 판단 및 조치 사항
- III. 비상 연락 체계
- IV. 심정지 응급조치법
- V. 사고유형별 대응 조치

2023. 1.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개요

- 1. 매뉴얼 제작 목적 1
- 2. 중대산업재해의 개념 1
- 3. 적용 범위 1

II. 재해 발생 시 판단 및 조치 사항

- 1. 판단 및 조치 사항 2

III. 비상 연락 체계

- 1. 재난안전관리 체계 3
- 2. 재난 상황 전달 체계 (내·외부 기관 공조 등) 4

IV. 심정지 응급조치법

- 1.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 6
- 2. 자동제세동기 시행 방법 7

V. 사고유형별 대응 조치

- 1. 추락 넘어짐 사고 8
- 2. 끼임, 베임, 절단사고 9
- 3. 화재사고 10
- 4. 전기 감전 사고 11
- 5. 충격쇼크 사고 12
- 6. 이상온도 접촉 사고 13
- 7. 가스 누출·중독 사고 14
- 8. 압사 사고 (넘어짐, 깔림) 15

I 개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1. 매뉴얼 제작 목적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 재난 상황 및 사고 발생 직후 사후조치 및 보고요령 안내

2. 중대산업재해의 개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적용범위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전북대학교 근로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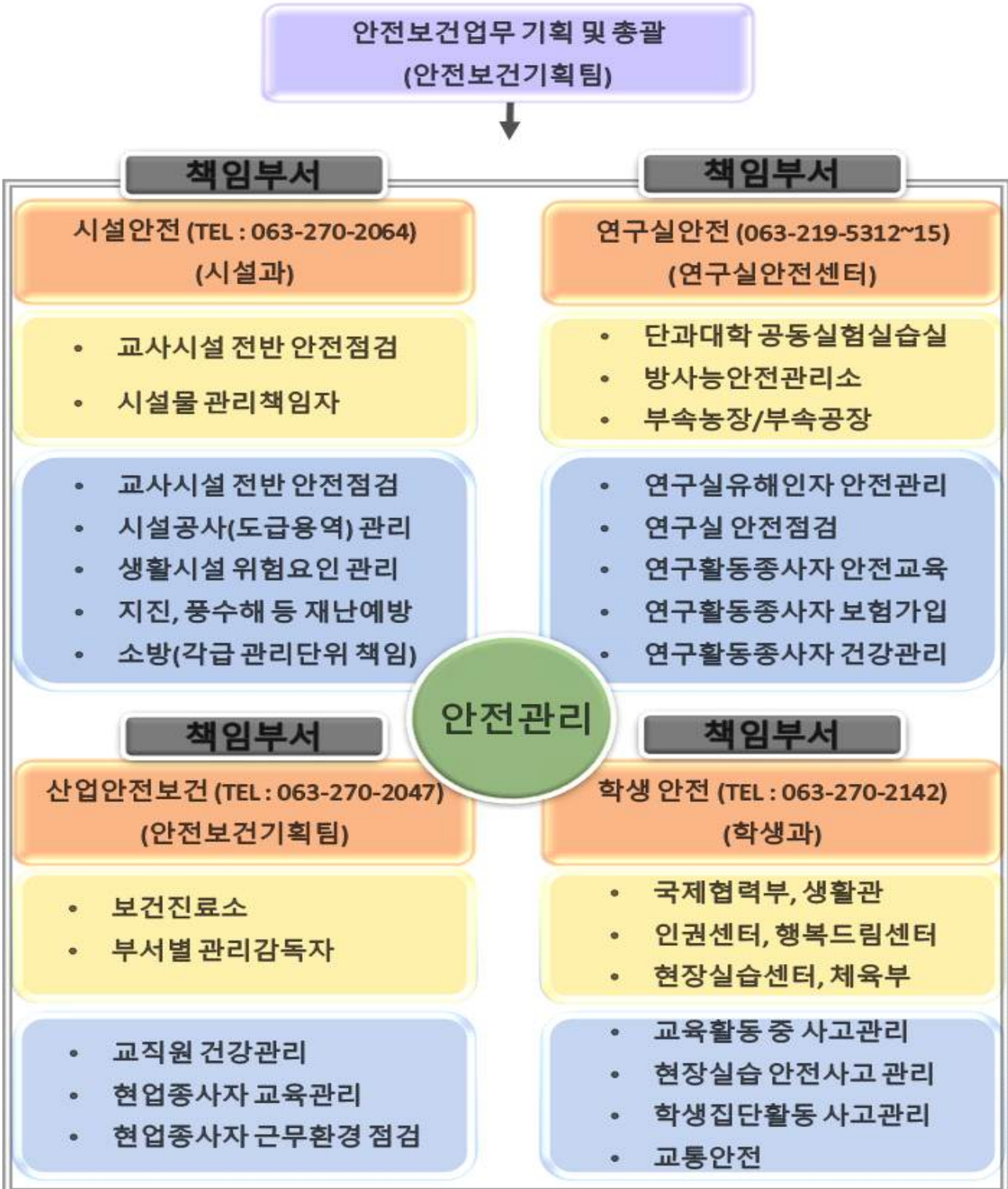
II 재해 발생 시 판단 및 조치 사항



Ⅲ 비상 연락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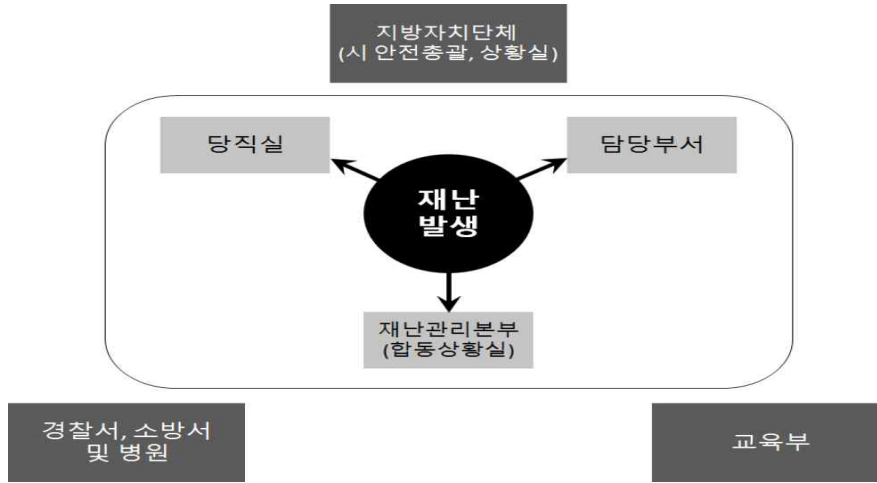
1. 재난안전관리 체계

○ 업무 총괄 조직 이하 안전영역을 총 4개의 책임부서로 세분화



2. 재난 상황 전달 체계 (내외부 기관 공조 등)

○ 조직 구성



○ 연락 및 상황 보고 체계



○ 응급 구호 및 재난상황 대응 기관

<작성기준 : 2022.11.09.>

응급구호

구분	기관, 단체명	전화	비고
구조인력지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063-280-5830~1	구호복지팀
장비지원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40-5380	사회공헌업무
	KT 전주지사	063-251-0001	통신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063-917-4016	재해관리업무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063-850-3897	본부 안전부

<작성기준 : 2022.11.09.>

재난상황실
운영
유관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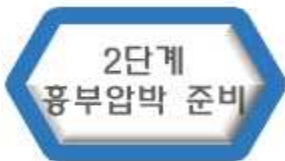
기관, 단체명	전화	비고
전라북도 도민안전실	063-280-3796	사회재난 분야
전주시 안전총괄과	063-281-2526	재난방재업무
전주덕진소방서	063-250-4200	
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063-277-0113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044-206-6665	
전라북도교육청	063-239-3515	비상대비업무
전북대학교병원	1577-7877	
금암119안전센터	063-274-0119	
전주시보건소	063-281-6200	

IV 심정지 응급조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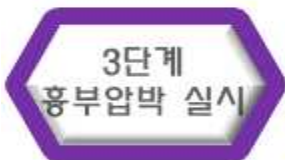
1.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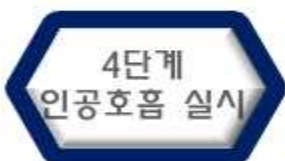
-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여부를 결정한다.



-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관찰하여 호흡여부를 파악한다.
- 환자를 눕힌 뒤 가슴 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딱지를 깬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 양 팔을 똑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손바닥과 가슴이 수직이 되도록 압박한다.
- 가슴 압박은 성인을 기준으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한 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코를 막은 채 1초에 걸쳐 숨을 불어넣는다.
- 방법을 모르거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



-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시행한다.
- 환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흉부압박 실시 후 10초의 시간의 여유를 주고 의식을 회복하는지 관찰한다.

<일러스트 출처 : 수원시>

2. 자동제세동기 시행 방법



1단계
의식확인

- 쓰러진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2단계
기계작동
준비

-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관찰하여 호흡여부를 확인한다
- 전원버튼을 눌러 작동을 실시한다.



3단계
전기충격
사전준비

- 패드는 1.오른쪽 빗장 뼈 아래, 2.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 두 곳에 부착하고, 패드와 기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연결을 시행한다.
- 분석중이라는 음성이 나오면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기계의 다음 지시까지 기다린다. 제세동 실시필요 음성이 나온 경우 기계가 충전되는 동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4단계
전기충격
시행

-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세동 버튼이 감박이며 감박이는 버튼을 눌러 전기충격을 시행한다.
- 누르기 전에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다.



5단계
반복
실시

- 전기충격 이후 즉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을 분석하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기충격 및 흉부압박이 지속되어야 한다.

V 사고유형별 대응 조치

1. 추락 넘어짐 사고

위험요인
제거조치

추락주의 표지 및 난간설치 등 방호조치

사고발생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위 사람에게 알림

구호조치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도움요청

작업중지
및
조기대응

재해자의 의식, 호흡확인 후 응급처치 실시

구호장비 이용하여 위험지역에서 대피

교내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에게 상황전파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 실시

✓ 골절: 부목을 이용하여 골절부위 고정,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이동

✓ 외상: 소독 및 필요한 연고를 바른 후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 보호

✓ 목뼈 손상: 환자머리를 고정시키고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

사고현장 통제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활동

유선보고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책임부서로 상황전파

책임부서는 긴급연락계통을 통하여 사고 발생전파

책임부서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현장을 보존

✓ 사고현장 당시 사진, 목격자 등 관계자의 신원확보

현장대응

재해발생경위 파악

✓ 재해자의 인적사항 파악

✓ 재해자의 부상경위 파악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해발생경위 분석 후 재해발생원인 추출

재해발생원인 분석 후 위험요인 추출

위험요인 추출 후 재발방지대책수립

이후 개선조치 이행

비상연락 상황실
063-270-4545

2. 끼임, 절단, 베임 사고

위험요인 제거조치

- 안전방호장치 확인 및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사고발생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위 사람에게 알림

구호조치

-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도움요청

작업중지 및 초기대응

- 재해자의 의식, 호흡확인 후 응급처치 실시
- 구호장비 이용하여 위험지역에서 대피
- 교내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에게 상황전파
-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 실시
 - ✓ 출혈방지를 위하여 지혈대, 압박붕대를 이용
 - ✓ 출혈부분은 심장보다 높이고 안정되게 눕힘
 - ✓ 병원의 수술에 대비하여 수분은 섭취금지
 - ✓ 쇼크방지를 위한 체온유지 필요
 - ✓ 절단부위는 생리식염수를 통해 씻고, 깨끗한 거즈로 감싸 타올을 이용하여 밀봉하고 얼음과 물을 1대1비율로 섞어 냉장보관
- 사고현장 통제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활동

유선보고

-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책임부서로 상황전파
- 책임부서는 긴급연락계통을 통하여 사고 발생전파

현장대응

- 책임부서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현장을 보존
 - ✓ 사고현장 당시 사진, 목격자 등 관계자의 신원확보
- 재해발생경위 파악
 - ✓ 재해자의 인적사항 파악
 - ✓ 재해자의 부상경위 파악

재발방지 대책수립

- 재해발생경위 분석 후 재해발생원인 추출
- 재해발생원인 분석 후 위험요인 추출
- 위험요인 추출 후 재발방지대책수립
- 이후 개선조치 이행

비상연락 상황실
063-270-4545

3. 화재사고

**위험요인
제거조치**

인화성 물질 관리 및 소화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사고발생

최초 발견자는 '불이야!'를 외치고 화재발생을 알림

구호조치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도움요청

초기 진압이 가능한 경우 소화기 및 소화전을 통한 신속진화

**작업중지
및
초기대응**

초기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작업중단 선언 후 즉시 대피

교내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에게 상황전파

대피 전 추가피해 방지조치의 여유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

✓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내 가연성 물질 제거

✓ 전기화재인 경우 전기 차단, 가스화재의 경우 가스밸브 차단

✓ 주위 인화성, 발화성, 폭발성 물질 제거

✓ 유독가스 흡입을 막기 위하여 통풍이 잘 되는 장소로 즉시 이동

안전한 곳에서 사고현장 통제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활동

유선보고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책임부서로 상황전파

책임부서는 긴급연락계통을 통하여 사고 발생전파

현장대응

책임부서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현장을 보존

✓ 사고현장 당시 사진, 목격자 등 관계자의 신원확보

재해발생경위 파악

✓ 재해자의 인적사항 파악

✓ 재해자의 부상경위 파악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해발생경위 분석 후 재해발생원인 추출

재해발생원인 분석 후 위험요인 추출

위험요인 추출 후 재발방지대책수립

이후 개선조치 이행

비상연락 상황실
063-270-4545

4. 전기감전사고

위험요인 제거조치 사고발생

- 절연장치 및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확인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위 사람에게 알림

구호조치

-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도움요청

작업중지 및 조기대응

- 즉시 전기차단
- 응급조치 후 작업중단 선언 및 종사자 대피
- 교내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에게 상황전파
- 호흡이 정지된 경우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제세동기 사용시 이동
- 안전한 곳에서 사고현장 통제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활동

유선보고

-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책임부서로 상황전파
- 책임부서는 긴급연락계통을 통하여 사고 발생전파

현장대응

- 책임부서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현장을 보존
 - ✓ 사고현장 당시 사진, 목격자 등 관계자의 신원확보
- 재해발생경위 파악
 - ✓ 재해자의 인적사항 파악
 - ✓ 재해자의 부상경위 파악

재발방지 대책수립

- 재해발생경위 분석 후 재해발생원인 추출
- 재해발생원인 분석 후 위험요인 추출
- 위험요인 추출 후 재발방지대책수립
- 이후 개선조치 이행

비상연락 상황실
063-270-4545

5. 쇼크사고(일사병, 열사병)

위험요인 제거조치

- 휴게시설 난방·냉방 기구, 폭염·한파시 근로시간 조절 등 안전조치

사고발생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위 사람에게 알림

구호조치

-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도움요청

작업중지 및 초기대응

- 재해자의 의식과 호흡 확인
- 구호장비 이동하여 위험지역에서 대피하고 작업중단 선언
- 교내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에게 상황전파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일사병 및 열사병 증상 의심
 - ✓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 구토 및 메스꺼움
 - ✓ 맥박이 불규칙하고 호흡이 불안정함
 - ✓ 의식을 잃음
-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 실시
 - ✓ 머리에 부상이 없는 경우 하체를 20~30CM 들어올림
 - ✓ 가슴 부상이 없는 경우 머리와 어깨를 높임
 - ✓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물, 차와 같은 수분 섭취 권장
 - ✓ 의식이 없는 경우 수분섭취 금지

유선보고

-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책임부서로 상황전파
- 책임부서는 긴급연락계통을 통하여 사고 발생전파

현장대응

- 책임부서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현장을 보존
 - ✓ 사고현장 당시 사진, 목격자 등 관계자의 신원확보
- 재해발생경위 파악
 - ✓ 재해자의 인적사항 파악
 - ✓ 재해자의 부상경위 파악

재발방지 대책수립

- 재해발생경위 분석 후 재해발생원인 추출
- 재해발생원인 분석 후 위험요인 추출
- 위험요인 추출 후 재발방지대책수립
- 이후 개선조치 이행

비상연락 상황실
063-270-4545

6. 이상온도 접촉사고

위험요인
제거조치

기구설비 등 위험경고표지 부착 등 안전조치

사고발생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위 사람에게 알림

구호조치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도움요청

작업중지
및
조기대응

재해자의 의식과 호흡 확인

구호장비 이동하여 위험지역에서 대피하고 작업중단 선언

교내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에게 상황전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일사병 및 열사병 증상 의심

✓ 1도 화상 : 열에 의하여 피부가 붉어진 정도

✓ 2도 화상 :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

✓ 3도 화상 : 신경 및 조직의 파괴 동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 실시

✓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의복은 벗기지 말고 화상부위 처치

✓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 의식이 없는 경우 수분섭취 금지

사고현장 통제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활동

유선보고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책임부서로 상황전파

책임부서는 긴급연락계통을 통하여 사고 발생전파

현장대응

책임부서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현장을 보존

✓ 사고현장 당시 사진, 목격자 등 관계자의 신원확보

재해발생경위 파악

✓ 재해자의 인적사항 파악

✓ 재해자의 부상경위 파악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해발생경위 분석 후 재해발생원인 추출

재해발생원인 분석 후 위험요인 추출

위험요인 추출 후 재발방지대책수립

이후 개선조치 이행

비상연락 상황실
063-270-4545

7. 가스 누출 · 중독 사고

위험요인
제거조치

배기장치 및 환기장치, 안전보호구 등 안전조치

사고발생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위 사람에게 알림

구호조치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도움요청

작업중지
및
조기대응

재해자의 의식과 호흡 확인

구호장비 이동하여 위험지역에서 대피하고 작업중단 선언

교내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에게 상황전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가스중독 의심

 v 위통, 구토, 경련, 현기증 등 의식불명 상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 실시

 v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송하고 의복을 느슨하게 푼다.

사고현장 통제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활동

유선보고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책임부서로 상황전파

책임부서는 긴급연락계통을 통하여 사고 발생전파

현장대응

책임부서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현장을 보존

 v 사고현장 당시 사진, 목격자 등 관계자의 신원확보

재해발생경위 파악

 v 재해자의 인적사항 파악

 v 재해자의 부상경위 파악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해발생경위 분석 후 재해발생원인 추출

재해발생원인 분석 후 위험요인 추출

위험요인 추출 후 재발방지대책수립

이후 개선조치 이행

비상연락 상황실
063-270-4545

8. 압사사고 (넘어짐, 깔림)

위험요인 제거조치

다중밀집구역 안전계획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

사고발생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위 사람에게 알림

구호조치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도움요청

작업중지 및 조기대응

재해자의 의식과 호흡 확인

구호장비 이동하여 위험지역에서 대피

교내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에게 상황전파

압사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 실시

✓ 인파가 많이 몰릴 때 대형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대각선으로 이동

✓ 이동이 불가하여 압사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리를 고정시키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아 호흡공간 확보

✓ 넘어졌을 경우 몸을 웅크리고 몸을 보호하여 안전한 자세 취하기

사고현장 통제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활동

유선보고

상황실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책임부서로 상황전파

책임부서는 긴급연락계통을 통하여 사고 발생전파

현장대응

책임부서 및 안전보건기획팀은 현장을 보존

✓ 사고현장 당시 사진, 목격자 등 관계자의 신원확보

재해발생경위 파악

✓ 재해자의 인적사항 파악

✓ 재해자의 부상경위 파악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해발생경위 분석 후 재해발생원인 추출

재해발생원인 분석 후 위험요인 추출

위험요인 추출 후 재발방지대책수립

이후 개선조치 이행

비상연락 상황실
063-270-4545

[붙임 1] 산업재해조사표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 산재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근로자 수	
	④ 업종		소재지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⑦ 원수급 사업장명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 공사종류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공사현장 명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 체류자격:	[]	⑪ 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 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⑭ 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⑮ 상해종류 (질병명)		⑯ 상해부위 (질병부위)		⑰ 휴업예상일 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IV. ⑳ 재발 방지 계획	⑲ 재해발생원인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사업주
근로자대표(재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작업지역·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 방법

I. 사업장 정보

- ①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② **사업장명**: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자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③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 ④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정소업 등]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⑦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⑨ **공사 종류, 공정명, 공사금액**: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명**: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명을 적습니다.(단위공정명이 아님)

II. 재해자 정보

- ⑩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 ⑪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도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정소원 등]
- ⑫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 ⑬ **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 ⑭ **근무형태**: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가로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⑮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열압, 뇌졸중, 피부염, 전폐, 수근관증후군 등]
- ⑯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⑰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III. 재해발생정보

- ⑱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를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 ⑲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를 적습니다.

IV. 재발방지계획

- ⑳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붙임 2]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서

(출처 : 서울서부지청-정보공개-부서별 자료실 - 중대재해 발생보고 서식)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

문서번호 : 20

수 신 :

발 신 :

1. 사업장 개요(현장)

구분	사업장명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소재지
도급인					
수급인					

2. 사업 또는 사업장 개요(본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소재지
도급인					
수급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재

3.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년 월
재해정도	<input type="checkbox"/> 사망(명) <input type="checkbox"/> 부상(명)	치료예상기간	

4.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생형태	
기 인 물		행정조치	

- 사고경위
- 조치 및 전망
- 조사반 편성방법
- 기타 중요한 사항(재해 인지 경위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